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581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김 경, 김규남, 김기덕,
김형재, 민병주, 박승진,
송재혁, 아이수루, 왕정순,
, 유정인, 유정희, 이용균,
정준호, 최재란, 한 신,
허 훈, 홍국표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2024년 9월부터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별적으로 육성 중이던 전통문화산업을 탈피하고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과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,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하고 서울시가 보유한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.
- 특히,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의 일환으로 전통문화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, 서울특별시가 전통문화유산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의 진흥으로 목적의 범위를 확장하여, 관광을 포함 교육, 콘텐츠 등 전통문화를 계승한 전 분야의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2. 주요내용

- 가. 관련 상위 법 제정 및 시행으로 목적 개정(안 제1조)
- 나. 시장의 책무 중 전통문화의 계승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조항 개정(안 제3조)
- 다.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한 개발지원으로 조항 개정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「전통문화산업진흥법」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 본문 중 “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에 따라”에서 “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, 「전통문화산업진흥법」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개인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관광자원화 개발지원)”을 “(전통문화 개발지원)”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광자원화 사업”을 “전통문화산업 개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의 “관광자원화를”을 “전통문화산업 진흥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·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, 「전통문화산업진흥법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시장의 책무)① (생략) 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,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>	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시장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개인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제6조(관광자원화 개발지원)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	제6조(전통문화 개발지원)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전통

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
3.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

문화산업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·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(목적) 「전통문화산업 진흥법」을 추가로 명시하고, 제6조 조제목을 관광자원화에서 전통문화로 변경하는 등 조례 전반의 자구를 수정한 것¹⁾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“관광자원화”를 “전통문화 산업”으로 자구를 변경하였을 뿐 규정에 의해 사업이 추가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